

2022. 6. 20.(월) 10:00

제29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6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민선8기 출범 대비 복잡·다양한 행정수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분야에 대한 공무원 정원 조정으로 조직 운영체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 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 : 1,003명 → 1,006명(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986명 → 989명(안 제2조제1호)
 -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 : [별표 3]
 - 총 정원 : 1,003명 → 1,006명
 - 본청정원 : 641명 → 644명
- ※ 기타 직급별 세부 인원 조정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민선8기 출범 대비 복잡·다양한 행정수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필요 분야에 대한 공무원 정원 조정으로 조직 운영체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2조(정원의 총수)에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였음
 - 제2조 중 지방공무원 정원 : 1,003명 → 1,006명 (증3)
 - 제2조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 986명 → 989명
- [별표 3]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함
 - 총 정원 : 1,003명 → 1,006명 (증3)
 - 본청 정원 : 641명 → 644명
 - ☞ 자치행정과: 별정직6급 상당(+1), 세무과: 세무6급(+1), 세무9급(+1)

○ 검토의견

- 민선8기 출범에 맞춰 효율적인 조직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에 따른 공무원 정원조정으로 검토결과 법령에 위반됨이 없음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3” 을 “1,006” 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제1호 중 “986” 을 “989” 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을 <u>1,003명</u>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986명</u>	제2조(정원의 총수) ----- ----- ----- <u>1,006명</u> ----- -----. 1. ----- : <u>989명</u>

【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1,003 1,006	641 644	17	112	177	56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971 973	636 638	17	85	177	56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42	28	2	2	7	3
6급이하 계	920 922	602 604	14	82	169	53
연구직 계	3	3				
연 구 관						
연 구 사	3	3				
지도직 계	27			27		
지 도 관	2			2		
지 도 사	25			25		
별정직 계	1 2	1 2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1 2	1 2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 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소요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민선8기 출범 대비 복잡·다양한 행정수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분야 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변경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공무원 증원 3명(일반직 6급 +1, 9급 +1 / 별정직 6급 상당 +1)

3. 관련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에 따름
- 연도별 비용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3.8%로 산정

나. 추계 결과 : 875,975천원 정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875,975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875,975천원 정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기획예산실 기획팀장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 입		162,376	168,547	174,952	181,600	188,500	875,975
지 방 세		162,376	168,547	174,952	181,600	188,500	875,975
의존재원							
세 출		162,376	168,547	174,952	181,600	188,500	875,975
인 건 비		162,376	168,547	174,952	181,600	188,500	875,975
재원 조달		162,376	168,547	174,952	181,600	188,500	875,97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균 비		162,376	168,547	174,952	181,600	188,500	875,975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6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일몰이 도래한 군세 감면사항으로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수산가공품에 대한 근거 법률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간 3년 연장 및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제1항, 제5항)
 - 감면기간 연장 : 2022년 6월 30일 → 2025년 6월 30일
 - 인용 조문 정비 : 제8조제5항 → 제8조제6항
- 수산가공품 관련 근거 법률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제3호)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간 연장에 맞춰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부칙 조항 삭제(안 조례 제2620호 부칙 제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5.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일몰이 도래한 군세 감면사항으로써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간의 연장 및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근거 법률 변경사항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2조제1항과 제5항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3년 연장 및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 제5조제3호 「식품산업진흥법」 으로부터 수산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시행.2021.2.19.)됨으로써 관련 근거 법률로 변경함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 조례제2620호부칙제3조에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특례 조항을 삭제함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세제감면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하고, “2022년 6월 30일”을 “2025년 6월 30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하고,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전문판매점”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하고, “교부결정일로부터”를 “교부결정일부터”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을 “취소 또는 입주계약이 해지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감면받고자 하는”을 “감면받으려는”으로 하고,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로 한다.

조례 제2620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납세의
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2.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생략)

1. 2. (생략)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10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와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2025년 6월 30일---.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제
8조제6항 -----

-----.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전문판매점-----

제10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이 조에서는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기업이 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단, 보조금 지급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마지막 보조금 교부결정일까지로 한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보조금과 관련된 신규 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다만,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직접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2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생략)

1. (생략)

[illegible]

제12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9조의
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
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
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
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
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조례 제2620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
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
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

2. -----

----- 취소 또는 입주계약이
해지된 -----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
----- 감면받으려는 -----

-----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
청서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조례 제2620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삭 제>

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감면,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⑧ (생략)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2021. 1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6. 12. 27., 2018. 12. 2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 2022. 1. 1.][대통령령 제32292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 4. 17., 2012. 12. 21., 2015. 12. 31., 2016. 12. 30., 2018. 12. 31.>

②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5. 12. 31., 2020. 1. 15.>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 1. 15.>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5.>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15.>

⑥ 법 제17조 제1항 및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31., 2016. 12. 30., 2020. 1. 15.>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7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④ (생략)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364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5.] [보건복지부령 제871호, 2022. 3. 15.,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9. 6.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6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착한가격업소의 정의(안 제2조)
-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안 제4조)
-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안 제5조)
-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포상(안 제7조, 제8조)

5.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소상공인기본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달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2조에 착한가격업소와 소상공인의 정의 규정
-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사후 관리사항 규정
-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물가모니터 요원의 임무, 운영현황 점검, 영업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보다 내실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붙임 1. 달성군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지정기준
2. 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지정기준

□ 2022년 5월 착한가격업소 현황

업종	개소	비고
이미용업	6	
한식	12	
목욕업	1	
계	19	

□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① 가격 기준 (45점)

- 가격 수준 : 해당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등(20점)
* (역세권,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
- 가격 안정 노력 :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6개월 내 동결여부, 소비자 물가 상승률(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인상 여부 등(15점)
- 저렴한 가격상품의 비중 : 업소의 총 서비스 제공 품목 중 저렴한 가격 상품의 비중(10점)

②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30점)

- 주방, 매장(주영업시설) 및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도(30점)

③ 업소의 품질·서비스 기준 (20점)

- 이용만족도 부문 : 업소 이용 후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평가(10점, 차등배점)
- 운영 및 시설 부문 : 업소 운영에 있어 소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여부 평가 (각 5점) * 기준별 세부항목은 평가표 참고

④ 공공성 기준 (5점)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각종 시책 이행여부 (5점)

⑤ 가점 부여 기준 (10점)

- 봉사활동, 특정계층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특정계층, 세대할인 여부 (8점)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 (2점)
* 정부시책 반영에 따른 사회적 가치 반영으로 배점조정

▷ 평가표에 의거 평점 총합이 70점(가점포함) 이상 및 가격기준 평점이 29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 순으로 우선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섬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 평가기준 허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그 밖의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업소로서 가격·품질·위생·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이 조례의 목적 범위에서 군수가 군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를 매월 1회 이상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제4조제1항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관련된 정보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가격 조사 등 지정기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물품과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 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및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같은 영 제4조및

제7조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 제2항 제1호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6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가축사육 제한구역 시행('18. 6. 11.) 이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용도를 현재 운영 중인 시설로 변경하여 적법하게 운영토록 하고 축산농가의 사육권을 보호하고자 함
- 가축분뇨배출시설에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악취저감 등 축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배출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한 규정(신설)
- 가축분뇨배출시설에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신설)
-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신설)

5.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가축사육 제한구역 시행(2018. 6. 11.) 이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용도를 현재 운영 중인 시설로 변경하여 적법하게 운영토록 하고,
- 가축분뇨배출시설에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악취저감 등 축산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3조 제2항 제5호에 배출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현대화 시설을 갖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출시설 내에서 배출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신설)
- 제3조 제3항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현대화 시설 기준(별표2)을 규정(신설)
- 부칙제2조에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신설)

부칙제2조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신설)>

2018. 6. 11. 달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달성군 고시 제2018-108호) 시행 이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배출시설의 증축 목적으로 2018. 6. 11.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용도의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증축시설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이 조례 (별표1. 달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위 3년의 기간 내에 위 배출시설 및 그 증축 시설에 관하여 이 조례 (별표2. 달성군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에 따른 현대화시설을 갖추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할 경우 위 3년의 경과 후에도 (별표 1) 부적용의 효력은 지속된다.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시행

2022년 4월14일부터 가축 분뇨 배출시설(축사)을 허가규모 이상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악취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는 축사 설치단계부터 악취의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담당 시군구에서 적정성을 확인하여 축사 인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다. 제출 의무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새로 받으려는 축산농가다. (2022. 4.14.시행)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배출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현대화 시설을 갖추 경우 법 제2조에 따른 배출시설 내에서 배출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현대화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조례 제2785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이하 “기존 배출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는 개정규정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 그 시설이 위치한 장소가 포함된 경우라도 기존 허가 또는 신고한 내용에 따라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존 배출시설 설치·운영자는 기존 배출시설 장소에 새로운 배출시설의 설치나 기존 배출시설의 증축을 할 수 없다. 다만, 기존 배출시설의 현대화나 개선을 통해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폐수의 발생량을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그 시설을 증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2018. 6. 11. 달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달성군 고시 제2018-108호) 시행 이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배출시설의 증축 목적으로 2018. 6. 11.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용도의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증축시설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이 조례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위 3년의 기간 내에 위 배출시설 및 그 증축시설에 관하여 이 조례 별표2에 따른 현대화시설을 갖추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할 경우 위 3년의 경과 후에도 별표 1 부적용의 효력은 지속된다.

【별표 1】

달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주거·상업·공업지역 경계로부터 800m 이내의 지역(다만,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000m 이내)
 - 제36조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자연·생산녹지)내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800m 이내의 지역(다만,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000m 이내)
 - 제36조의 녹지지역(보전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제37조의 취락지구 및 지구경계로부터 800m 이내의 지역(다만, 돼지·개·닭·오리·메추리는 1,000m 이내)
-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국가 및 지방하천)
- 「소하천정비법」제2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별표 2】

달성군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제3조제3항 관련)

(공 통) - 배출시설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를 하거나, 무창축사 배출구 주변에 담장(펜스 등)을 설치하여 악취 확산을 예방하여야 한다. -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배출시설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축 종	악취저감시설 기준
소 (젖소, 말포함)	- 배출시설은 톱밥 또는 왕겨축사 이어야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센티미터(젖소는 10센티미터) 이상 깔아야 한다.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원치커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돼지	- 배출시설은 무창축사 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원치커튼 등)을 설치하고, 밀폐된 구조로 출입구의 개폐가 가능하도록 개폐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닭, 오리, 메추리	-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는 무창축사 이어야 하고, 배출시설의 바닥은 콘크리트 구조로 왕겨 또는 톱밥을 30 센티미터 이상 깔아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처리시설(퇴비사 등)을 설치할 경우 처리시설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원치커튼 등)을 설치하고, 밀폐된 구조로 출입구의 개폐가 가능하도록 개폐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 양 (염소 포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원치커튼 등)을 설치하고,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밀폐된 구조로 출입구의 개폐가 가능하도록 개폐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에 따라 -----.	제1조(목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법 제2조제1호에 -----.	제2조(정의) ----- -----. 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구역은 별표와 같으며, ----- ② (생 략)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구역은 별표 1과 같으며,-----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배출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현대화 시설을 갖추 경우 법 제2조에 따른 배출시설 내에서 배출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현대화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5.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 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10.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농협조합
 - 나.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다.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 라.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개정 2015. 3.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6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규제 개선 과제」선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반영

4.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를 반영하여 전대 금지의 예외 규정을 둬으로써 지자체의 경쟁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선하고자 함(제19조)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를 조례에 반영토록 함

○ 주요내용

- 제19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를 반영하여 시설물의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를 다시 전대할 수 있도록 전대금지의 예외 규정을 신설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운영 및 관리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전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규제목적은 타당하나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많은 규제으로써 수탁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고 일부 전대행위를 허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전대금지)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설물의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를 다시 전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전대금지)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9조(전대금지) ----- ----- ----- ----- 다만, 시설물의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 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를 다시 전대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6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조례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안 제3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위 및 보수 수준의 향상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함(안 제6조)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제14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5.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3조 적용대상은 달성군이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정함
- 제6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 등
- 제7조에서 제14조까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수당과 여비 등을 규정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 2

④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1. 시행일: 2022. 6.22.]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한 수혜적 조례로써 타 법률 및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달성군 사회복지사 현황

연번	시설 구분	개소 수	종사자 수	비 고
1	노 인 복 지 시 설	339	263	경로당:326개소 (종사자 없음)
2	아동·영유아복지시설	96	946	
3	장 애 인 복 지 시 설	14	141	
4	기 타 복 지 시 설	7	91	
계		456	1,441	

○ 달성군 사회복지공무원 현황 : 132명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련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보호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장
2.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3. 관련 업무 담당 대구광역시 달성군 5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동복지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사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역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해촉 등)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 본인이 해촉이나 임명 취소를 원하는 경우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시행일: 2022. 6. 22.] 제3조의2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6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변경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정보의 요청 및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피해 발생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재난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른 규정 신설
 -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요청·활용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 재해 발생으로 비상 근무 시 수당·휴무 등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 방안 마련(안 제20조의3)
 - 피해지원에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추가(안 제36조)
 -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안 제36조의2)
 -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 추가(안 제36조의3)
-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장제5절 등)

5.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근거한 변경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재난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보 요청 및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둌으로써 비상 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2018. 7. 26.)에 따른 정비
 - 제20조의2에서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 및 위치정보의 요청, 제공,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신설)
 - 제20조의3은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한 시간외 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비상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음(신설)
 - 제36조에 재난으로 사망, 또는 부상당한 자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신설)
 - 제36조의2와 3에서는 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상에 따른 책임내용 추가, 구상권을 청구받은 원인제공자가 초과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제2장제5절 등에는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검토의견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 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 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7. 1. 17.>

□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 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붙임 1.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에 대한 지원내용 1부.
2. 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에 대한 지원내용

☐ 지원근거

-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

☐ 지원종류

- 생활안정지원 : 주택에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주거비” 지원
 - 주거비 : 주택에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규모에 따라 선지급
 - 생계비 : 소득이 발생하는 산업(농업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선지급
 - 수업료 :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면제
- 간접지원 : 자금 융자, 대출금의 상환기환 연기 및 이자 감면,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 지원금 산정기준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74호)에 의거 지원

☐ 장례비·치료비 산정 근거

- 장례비 :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참고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인 16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
- 치료비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

☐ 지원 결정

지원결정은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 36조 2항에 의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의3(수당 등) ①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른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장제5절의 제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으로 한다.

제34조 중 “법 제60조”를 “법 제60조제2항”으로, “재난에”를 “재난에 대하여”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전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36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36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36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 중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를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관리하고,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종전 조례 제36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KT []SKT []LGU+ []기타
	유선전화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확정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응자신청 여부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뒤쪽)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달성군수가 생활안전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달성군수가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3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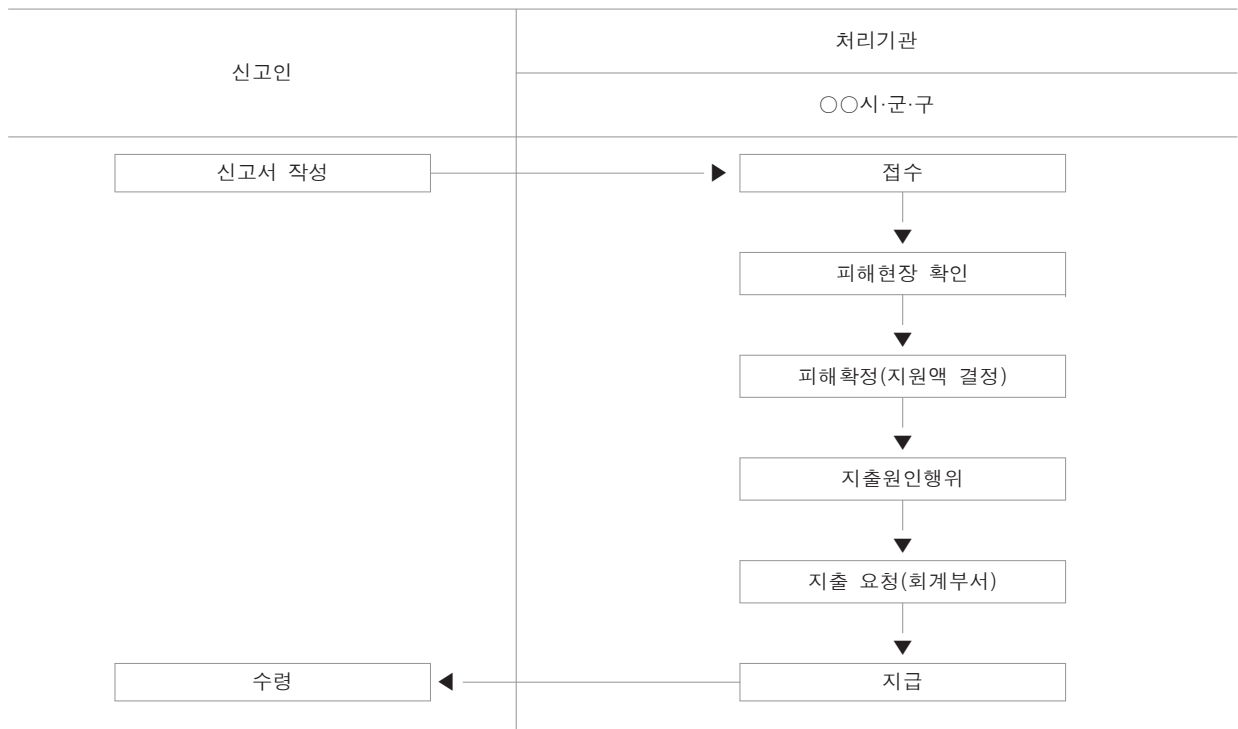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전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0조의2(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u>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u><신 설></u>	제20조의3(수당 등) ①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 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른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u>제5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u>	<u>제5절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u>

제34조(적용범위) 제5절의 각 규정은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제36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제34조(적용범위) -----
----- 법 제60조제2항-

-----재난에 대하여 ----
----.

제36조(지원기준)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전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36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36조제1항 각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36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

인제공자는 군수는 제36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u>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u>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7조(중복지원 금지) ----- ----- ----- ----- 원인제공자----- ----- ----- ----- -----.
제3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u>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u> (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 ⑤ (생략) ⑥ <u>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읍·면장은</u>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u>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u>군수는 제1항</u>----- - <u>따른</u> -----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관리하고, <u>피해사실이 인정되면</u>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 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6월 14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달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중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농기계임대사업 이용 대상 기준 명시 (안 제3조제4호)
- 농기계안전사고 대비 임대농기계 보험가입 의무화 (안 제5조제3항)
- 임대료 납부 방법 신용카드 결제 추가 (안 제7조제1항, 제10조제3항)
- 임대기간 및 운영시간 명확화 (안 제8조제1항, 제2항)
- 임대료 부과 기준, 임대료, 기종선정 방법 변경(안 제10조제1항)
- 임대자의 책임 범위 변경 (안 제13조제4항)

5.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중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19. 6.25.)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3조제4호에 농기계임대사업 이용 대상 기준 명시
- 제5조제3항에는 임대농기계 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신설)
-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임대료 납부방법으로 신용카드 결제 추가
-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임대기간 및 임대사업 운영시간(신설) 정함
- 제10조제1항에 임대료 부과 기준, 임대료, 기종선정 방법
- 제13조제4항에 임차인의 책임 범위
- 제17조 대장의 비치(신설)
 - 별표1(농기계 임대료), 별지제1호~제4호(서식)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중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보완코자 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1. 관련 참고자료 1부.
2. 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참 고 자 료

□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

○ 임대사업장 현황

구 분	규 모	보유기종	준공년도	비 고
계	3개소	95종 650대		
농업기술센터(옥포)	1,215㎡	278대	2009년	
남부사업장(현풍)	330㎡	210대	2012년	
동서부사업장(하빈)	595㎡	162대	2012년	

○ 임대사업장 임대 실적 현황

(단위: 건)

구 분	임대실적	임대수입	비 고
2020년	10,605건	69,272천 원	※ 코로나19 관련 2020.4월 ~ 2022.6월 임대료 50% 감면
2021년	12,492건	72,090천 원	
2022년(6.8일현재)	5,768건	29,531천 원	

○ 임대사업장 농기계 보유현황

(단위: 건)

농기계 구입 금액	해당 기종	
	수량(대)	비율(%)
계	650	100
500만원 미만	431	66.3
500만원 ~ 1,000만원	126	19.4
1,000만원 ~ 1,500만원	34	5.2
1,500만원 ~ 2,000만원	16	2.5
2,000만원 ~ 2,500만원	22	3.4
2,500만원 이상	21	3.2

□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임대료 부과기준 개정 (안)

○ 임대농기계 임대료 부과 기준

구 분	임대료 개정 (안)	현행 임대료
부과기준 및 임대료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임대료(18구간) <u>기준의 50% 적용</u>	농기계구입 가격 <u>0.2% (원단위 절사)</u>

※ 임대료 개정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 인근 시·군 조례개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 부담의 최소화 방안으로 시행규칙 임대료 기준의 50% 적용

○ 농기계 임대료 비교

(단위: 원)

구간	농업기계 구입가격	임 대 료 (개정안)	임 대 료 (현 행)
1	100만원 미만	5,000	1,000
2	100만원 ~ 200만원 미만	6,000	2,000 ~ 3,000
3	200만원 ~ 300만원 미만	7,000	4,000 ~ 5,000
4	300만원 ~ 400만원 미만	9,000	6,000 ~ 7,000
5	400만원 ~ 500만원 미만	11,000	8,000 ~ 9,000
6	500만원 ~ 600만원 미만	14,000	10,000 ~ 11,000
7	600만원 ~ 700만원 미만	16,000	12,000 ~ 13,000
8	700만원 ~ 800만원 미만	18,000	14,000 ~ 15,000
9	800만원 ~ 900만원 미만	20,000	16,000 ~ 17,000
10	900만원 ~ 1,000만원 미만	23,000	18,000 ~ 19,000
11	1,000만원 ~ 1,500만원 미만	32,000	20,000 ~ 29,000
12	1,500만원 ~ 2,000만원 미만	42,000	30,000 ~ 39,000
13	2,000만원 ~ 2,500만원 미만	55,000	40,000 ~ 49,000
14	2,500만원 ~ 3,000만원 미만	65,000	50,000 ~ 59,000
15	3,000만원 ~ 3,500만원 미만	80,000	60,000 ~ 69,000
16	3,500만원 ~ 4,000만원 미만	92,000	70,000 ~ 79,000
17	4,000만원 ~ 4,500만원 미만	97,000	80,000 ~ 89,000
18	5,000만원 ~	105,000	100,000~

○ 임대료(개정) 구간별 주요 기종

구간	농업기계 구입가격	임대료(원)	주요 기종
1	100만원 미만	5,000	비료살포기, 비닐피복기, 감자수확기
2	100만원 ~ 200만원 미만	6,000	콩탈곡기, 플라우(쟁기), 고구마수확기
3	200만원 ~ 300만원 미만	7,000	관리기, 플라우, 로타베이터 마늘수확기
4	300만원 ~ 400만원 미만	9,000	관리기, 동력배토기, 퇴비살포기 심경로타리
5	400만원 ~ 500만원 미만	11,000	경운기, 퇴비살포기, 플라우, 감자수확기, 논두렁조성기, 휴립복토기, 덩굴파쇄기
6	500만원 ~ 600만원 미만	14,000	논두렁조성기, 덩굴파쇄기, 다목적수확기 플라우, 심토파쇄기 휴립복토기, 마늘양파수확기
7	600만원 ~ 700만원 미만	16,000	퇴비살포기, 심경로타리, 플라우 반전집초기
8	700만원 ~ 800만원 미만	18,000	휴립복토기, 동력파쇄기, 플라우
9	800만원 ~ 900만원 미만	20,000	잔가지파쇄기, 퇴비살포기, 파이프밴딩성형기,
10	900만원 ~ 1,000만원 미만	23,000	동력콩탈곡기, 육묘용파종기, 콩정선기
11	1,000만원 ~ 1,500만원 미만	32,000	퇴비살포기, 양파파종기, 모우어, 로타베이터
12	1,500만원 ~ 2,000만원 미만	42,000	마늘파종기, 돌파쇄기, 결속기 고소작업차
13	2,000만원 ~ 2,500만원 미만	55,000	농업용굴삭기, 퇴비살포기, 랩피복기
14	2,500만원 ~ 3,000만원 미만	65,000	양파정식기, 랩피복기
15	3,000만원 ~ 3,500만원 미만	80,000	트랙터, 원형결속기
16	3,500만원 ~ 4,000만원 미만	92,000	동력파쇄기
17	4,000만원 ~ 4,500만원 미만	97,000	양파정식기
18	5,000만원 ~	105,000	원형결속기

○ 인근 시·군 임대료 현황

시·군 명	임 대 료	비 고
달 성 군	(현 행) 농기계구입가격의 0.2% (1,000원 ~) (개정안)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임대료 50%적용	1회 요금 (1박2일 기준)
대 구 광 역 시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임대료 100% 적용	1일 요금
고 령 군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임대료 85% 적용	1일 요금
성 주 군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임대료 100% 적용	1일 요금
군 위 군	최저 10,000원 ~ 최고 200,000원 (20구간 요금)	1일 요금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임대료 기준 <개정 2019. 6. 25.>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5,000만원 이상	210,000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기계 임차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이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경작지가 달성군에 있는 자로서 군수에게서 농기계를 임대 받아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농기계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신청서”를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하여”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대는 1회(1회의 기간은 2일, 이하 같다)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1회씩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1회 임대기간이 2일이 되지 않더라도 2일을 임차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대사업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대대상 농기계의 임대료는 별표1과 같으며, 임대대상 농기계 기종 선정은 수요조사를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모든 책임을 진다”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대장의 비치)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사용 신청대장(별지 제3호서식),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기계임대 연장기간 및 임대료의 적용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이 조례 시행 후 그 임대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농기계 임차인(이하 “임차인” 이라 한다)이란 <u>군수에게서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u>	제3조(정의) ----- ---- <u>뜻은</u> -----. 1. ~ 3. (현행과 같음) 4. ----- <u>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경작지가 달성군에 있는 자로서 군수에게서 농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u>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 ② (생략) <신설>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농기계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u>
제7조(임대절차 및 기준)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도의 <u>신청서</u> 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임대사용 고지서를 발부받아 임대사용료를 <u>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u> 사용허가를 받은 후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임대절차 및 기준) ① ----- <u>신청서(별지 제1호서식)</u> ----- ----- <u>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하여</u>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8조(임대기간 및 교육) ① <u>임대기간은 2일을 1회로 하며 입고 시간은 일몰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u> <신설> ② ~ ③ (생략)	제8조(임대기간 및 교육) ① <u>임대는 1회(1회의 기간은 2일, 이하 같다)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1회씩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1회 임대기간이 2일이 되지 않더라도 2일을 임차한 것으로 본다.</u> ② <u>임대사업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u> ③ ~ ④ (현행 ② ~ ③과 같음)
제10조(임대대상 농기계 선정 및 임대료 등) ① <u>임대대상 농기계의 임대료는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농기계 구입가격의 0.2%로 하며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임대 대상 농기계 기종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군수로부터 위임을 받아 농업인 및 농민단체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기초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u> ② (생략) ③ <u>임대료의 납부는 납입고지서에 의거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u> ④ (생략)	제10조(임대대상 농기계 선정 및 임대료 등) ① ----- <u>별표 1과 같으며, 임대대상 농기계 기종 선정은 수요조사를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하여야 한다.</u>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3조(임차인의 책임) ① ~ ③ (생략) ④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u>모든 책임을 진다.</u>	제13조(임차인의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u>
<신설>	제17조(대장의 비치) <u>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사용 신청대장(별지 제3호서식),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u>

[별표 1]

가. 농기계 임대료

농기계 구입가격	임대료(1회당)
1) 100만원 미만	5,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7,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1,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4,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16,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18,0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20,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23,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32,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42,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55,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65,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8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92,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97,000원
18) 5,000만원 이상	105,000원

나. 포대 단위 사용 농기계(콩선별기) 임대료 : 1포/40kg 당 1,000원

다. 농기계상하차 보조구(농기계사다리)임대료 : 무료

농기계 임대 신청서

사 용 신청자	이 름	
	주 소	
	연 락 처	
사 용 신 청	농기계명	
	수 량	
	임 대 료	
	임대기간	
사 항	작업종류	
	작업면적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의거 임대농기계를 위와 같이 임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달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농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1. 위 임대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임대기간을 지켜야합니다.
2. 임대료의 납부기간은 임대허가일로부터 임대일 전까지입니다.
3. 농기계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임대농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5.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받습니다.
6.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7.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8. 임대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농기계 관리대장

연 번	기종명	제조회사	모델명	기대번호	규 격	수 량	구입가격(원)	구입일자	내구연한	비 고

183

임대료 수납대장

연 번	계 약 연월일	임 대 농 가			임대 농기계		임대기간	임 작 면적(m ²)	감면액 (원)	임대로 (원)	수 납 확인자	비 고
		성 명	주 소		기종명	대 수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2018. 12. 24.>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②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9. 6. 25.>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5,000만원 이상	210,000원

나. 가목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 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산정한 임대료의 ± 15 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

3.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4.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소요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한 수수료로 임대함으로써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 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 향상에 기여하며, 기계화 영농으로 농촌의 일손부족 해결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

2. 비용 발생 요인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대 농기계 보험에 가입 조항 신설

3. 관련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3항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험가입비 : 3개소 × 200대 × 100,000원 = 60,000천원 / 년간

나. 추계 결과 : 300,000천원 정도 / 5차년도

○ 대구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임대농기계 보험가입 비용은 5차년도 까지 총 300,0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300,000천원 정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불 임

6. 작성자 : 농촌지도과 농기계작물팀장 조현정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 입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지 방 세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의존재원		-	-	-	-	-	-
세 출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사무관리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재원 조달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지방세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군 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

